

목 차

인사말

감동이 지원한 사건 02

감동이 지원한 사례
감동에게 온 감사편지

늘어나는 이주민, 인권 없는 이주정책 06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완

감동의 감동적인 인연 12

이기연 후원자

2023년 이주 관련 판례 소개 14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28

감동의 재정보고 30

감동의 감동적인 후원자님들 32

감동의 소식이 더 궁금하시다면 35

감사 인사



감동이 지원한 사례

사례1

가정폭력 피해 여성 이혼 및 양육권 소송 지원

가정폭력 피해 여성 D씨는 결혼 초부터 한국에서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았으며,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거동이 불편하게 되자 피해여성 D씨는 혼자 거동이 어려워진 시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여성 D씨는 남편의 전처 소생 자녀 2명과 남편과 사사에서 태어난 자녀 1명을 키웠고, 남편의 전처 소생 자녀 2명과 사이가 좋았는데 특히 남편이 자주 아이들도 때렸는데 그럴 때마다 피해여성 D씨는 아이들을 감싸며 대신 맞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남편은 피해여성 D씨를 의심하여 안방에 CCTV를 달았고, 이를 알게 된 피해여성 D씨가 안방에 들어가지 않자 피해여성 D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 하였으며, 이때 피해여성 D씨의 시어머니도 역시 D씨를 폭행하여 D씨의 시어머니는 기소유예(고령임을 이유로), 남편은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감동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 D씨를 조력하여 법원에 이혼 및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였으며, 피해 여성 D씨가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사례2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소송 지원

이주노동자 B 등 19명은 2021년경부터 2023년 초까지 건설업자 P씨에게 고용되어 ㉠ 아파트와 ㉡ 아파트의 신축공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각 아파트 신축공사의 건축 마무리 공사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자 P씨는 2022년 하반기부터 이주노동자 B 등 19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밀린 월급이 총 약 3000만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동은 이주노동자 B 등 19명을 조력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청구하고 이와 함께 법원에 체불임금 소송을 청구하여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 지원 사례

- 산재 체류기간 연장 불허처분 취소소송
- 자녀 양육비 청구
-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분리 및 이혼 소송 지원
- 임금체불 소송
- 난민재신청 지원
- 재고용 불허 청구에 대한 진정 및 불허처분 취소 청구
- 기타 이혼 및 양육권 소송 등

감동에게 온 감사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출신 잔반퀴(아빠)와 잔반쯔영(아들)입니다.

저희는 2004년 한국에 와서 태000이라는 회사에서 오랜 기간 야간근무를 해왔습니다.

2022년도에 회사를 나왔는데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김포이웃살이 신부님들을 찾아갔고요.

노동청에 진정해서 밀린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사장님이 예전에 살았던 기숙사비를 내야한다며 통장 가압류를 거는 바람에 돈을 찾을 수 없게 됐는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의 고지운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제일 힘들었던 시간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은 센터의 운영이 많은 후원자분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후원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의 변호사님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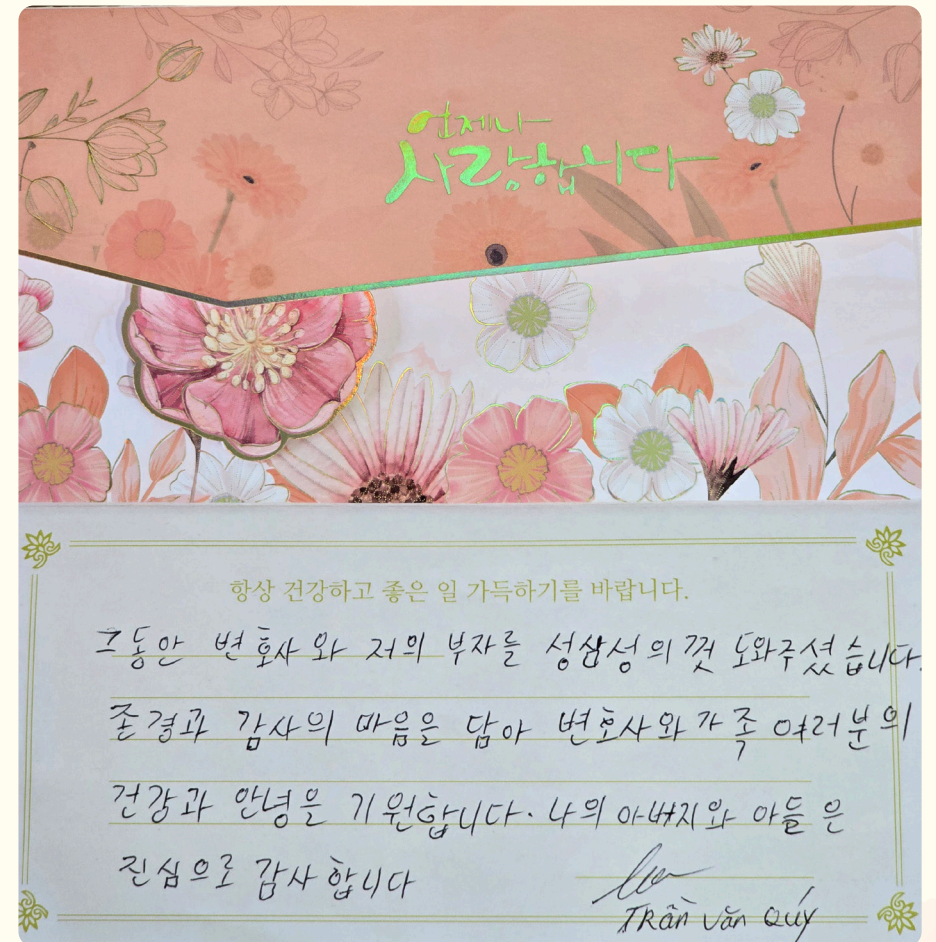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마지막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한번 더 드리며 편지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잔반퀴, 잔반쯔영 드림.

* 감동에서 임금체불 소송 등을 지원 받으신 잔반퀴님과 잔반쯔영님께서 감사편지와 감사카드를 보내오셨습니다. 감동의 후원자님들께도 감사인사를 전해오셨는데요. 보내주신 감사카드도 함께 실었습니다.



늘어나는 이주민, 인권 없는 이주정책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올해 2월 필리핀 정부의 이주노동자부에 방문해 한국의 계절노동자 상황과 관련한 이주 이슈에 대해 논의를 한 적이 있다. 필리핀은 2024년 1월 한국으로의 계절노동자 송출을 중단했다. 이주노동자를 보내고 받는 일에 있어, 사실상 을의 위치에 있는 송출국에서 먼저 송출 중단을 선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한국에 이주노동자가 오기 시작한 이래로 송출국에서 송출 중단을 선언한 것은 아마 처음일 것이다. 우리가 방문한 시기는 한국 정부의 노동부와 법무부가 방문하여, 당장 송출을 제기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간 직후였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의 태도는 확고했다. 너무나 심각한 인권침해와 거액의 브로커 비용을 요구하는 송출 브로커의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이후 이어진 현지 방문 조사에서는 한국으로의 이주노동에서 겪었던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수십 명씩 모여들었다.



필리핀 현지 방문 조사 2024. 2. 15. 한 지역에서만 80여 명의 계절노동자가 자신들의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모였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리핀 정부는 본격적으로 계절노동자 피해사례와 불법 송출 브로커 적발에 나섰다.

‘인간’이 아닌 ‘인구 정책 수단’으로 취급되는 이주민

최근 들어 이주민의 인권침해는 더욱 커지고 거액을 요구하는 불법 송출 브로커는 어느 때보다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잘못된 제도 설계와 운영의 피해는 결국 이주노동자들이 오롯이 감내하고 있다. 이런 난맥상은 계절노동자 문제뿐만이 아니다. 최근 쏟아지고 있는 거의 모든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들에서 사회적으로 숙의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중 하나가 잘 알려진 가사 노동자 건이다. 최근 서울시와 정부는 필리핀에서 가사 노동자가 9월경에 한국에 온다고 발표했다. 작년에는 서울시와 정부에서 작년 말까지는 온다고 했었다. 그 다음에는 2024년 상반기에는 온다고 다시 발표했었다. 9월에 온다는 이번 발표는 관련 발표가 여러 차례 미루어진 끝에 다시 나온 것이다. 이번에는 필리핀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도 있으니 2024년 하반기에는 정말 필리핀 가사 노동자가 한국에 올 것 같다. 서울시장이 필요성을 언급한 지 2년이 지났다.

가사 노동자를 둘러싼 여러 논쟁 중 하나는 이들의 임금이었다. 왜 임금이 문제가 되었을까?, 문제 제기의 핵심은 월 최저임금인 200만 원을 지불하고 자신들의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한국인 가정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었다. 결국 한국인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양육 부담을 줄여 출생률을 올리겠다는 일부 정치인과 정부의 얇은 계산은 다시 어그러진 것이었다. 그러자 외국에서 온 가사 노동자에게는 100만 원도 충분한 임금이라는 괴상한 이야기가 일부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서 저명하다는 어떤 대학교수와 정부 기관 연구자가 옹호 발언을 내놓았다.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게 그 정도 금액을 주고 있으며, 외국인 대상 차등임금 정책도 이미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 다른 나라 여성을 최저임금도 안 되는 비용으로 고용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이 가입한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가사 이주노동자 도입 이후로 홍콩과 싱가포르의 출생률이 썩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다.

가사 노동자를 보내줄 나라에서는 생각도 하지 않는데, 설익은 발표를 마구잡이로 먼저 하기도 했다. 이것이 한국 사회 각종 이민 정책의 소위 최신 흐름이다. 이런 흐름은 정부에서 쏟아져 나오는 다른 정책과 제도에서도 드러난다. 모든 초점은 산업 분야별로 필요로 하는 인력 충원, 지역소멸 그리고 인구 소멸 대응에 있다. 어디에서도 충분히 있을법한, 중장기적 계획이나 사회적으로 충분한 숙의 끝에 나온 모두를 위한 이민정책은 없다. 이는 일반

상식으로 살펴보았을 때 매우 이상한 일이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이렇게 대규모로 해외에서 이주민을 받아들였던 때가 없다. 하지만, 정부 정책 어디에도 함께 살게 된 이주민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정부 직영으로 운영되던 전국 9개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2023년 말로 모두 폐쇄되었다. 그리고 이주민과 관련한 지원에 산도 곳곳에서 삭감되었다. 공공서비스의 감소는 이주민들이 비용을 들여 행정사 등을 찾아가게 해 이주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거나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없게 만든다. 이 모든 악순환은 결국 정부가 이주민을 한국 산업계의 필요에 의해서만 들여오고, 부족한 부분의 숫자를 채울 뿐, 이주민을 살아 숨 쉬는 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동일 지역에서만 근무하게 해서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막는 ‘고용허가제 노동자 직장이동 지역 제한’, 인구 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 제한된 직종에서 일하면 영주권을 주는 ‘지역특화비자’ 제도 본격 시행 등 이주민을 지역소멸의 대안과 대책으로 여기는 제도가 속출하고 있다. 그리고 유학생 대폭 확대를 넘어 고등학생 유학생도 유치하고 있다. 학령기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과 고등학교의 폐쇄 위기의 유일한 대안이 유학생 유치인 것이다. 더욱이 고용허가제 노동자 쿼터 대폭 확대와 도입 업종 확대, 계절노동자 노동자 대폭 확대, 숙련기능노동자 대폭 확대 등, 분야별 산업계가 원하는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확대 발표가 줄을 잇고 있다.

‘평등한 권리 주체’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이주민’을 무시하고, 필요한 분야에 사회적 합의나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되는 이런 정책은 예상대로 너무나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돈벌이로 이용되는 유학생, 인간사냥을 자행하는 자경단의 등장, 행정사 고용 등 이주민의 사적 비용 증가, 거액의 송출비용을 요구하는 브로커 급증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돈벌이로 이용되고 있는 유학생 제도는 자교 학생을 거짓으로 출국시킨 한신대 사건과 처음부터 거짓으로 학생들을 모집한 세한대 사건을 만들어 냈다. 심지어 한신대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소장까지 얽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정부의 빈약한 인권 존중 의식은 이주민을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하는 ‘자국민보호연대’라는 자경단 조직의 등장으로 그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인종차별집단의 등장은 인종차별 철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정부가 자신들의 의무를 방조하고 때로는 오히려 이를 조장해 온 결과다.

잘못된 계절이주노동자 정책의 폐해 - 브로커가 판을 치는 세상

이런 정부의 안이함을 넘어 무능력하고 잘못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계절이주노동자다. 2015년 괴산에서 시범으로 시작된 계절노동자 제도는 도입 규모가 계속 증가해 2024년 상반기에만 131개 지자체에 배정된 인원이 49,286명에 달한다. 작물을 수확할 사람이 없어, 기계로 갈아 없애는 요즘 농어촌의 현실에서 함께 일할 사람은 절박하게 필요하다. 그러나 일 년 내내 농사를 짓는 하우스와 같은 시설농이 아닌, 특정 계절에만 작물을 수확하는 농민에게는 1년 내내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버겁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나온 정책이 계절노동자 제도였다. 계절노동자들은 주로 5월쯤 입국하여 5개월간 일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시작되었다가, 최근에는 3개월 연장하여 8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파종기와 수확기에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로 큰 환영을 받아왔다.

계절노동자 제도는 시행 초기 나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로 보였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시작부터 커다란 허점이 존재했다. 바로 이 모든 과정의 진행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거나 관련한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오롯이 아무런 경험과 역량이 없는 기초지자체에 맡긴 것이다. 계절노동자 제도는 국가 간 MOU 체결과 산업인력공단의 관리하는 고용허가제와 달리 노동부도 아닌, 법무부가 관할한다. 그리고 법무부는 체류비지만 내줄 뿐, 모든 업무는 기초지자체의 공무원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다.

지역의 작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네팔, 미얀마, 필리핀의 생소한 어떤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적절한 사람을 선발, 준비, 도입, 한국에서의 노동과 생활 그리고 귀국이라는 모든 과정의 책임을 떠안게 된 것이다. 인력 부족이라는 지역민들의 성화에 떠밀린 기초지자체의 아무런 경험과 전문성이 없는 어떤 공무원이 바다 건너 다른 기초지자체의 사정과 이주노동자 선발, 도입, 노동의 전 과정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예상대로 곧장 이런 빈틈을 노린 불법 브로커들이 판을 치게 되었다. 맡겨만 주면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사설 브로커의 유혹을 이기기 어렵다. 이들은 지자체와 결탁해, 해외 지자체 알선, 선발, 도입, 관리, 출국의 모든 업무를 사실상 대행하며, 이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

결국 이렇게 들어온 계절노동자들에게 예상했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브로커들은 적게는 한 사람당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이 넘는 송출 비용을 계절노동자 한 명이 내게 했다. 5개월간의 노동으로 예측되는 총수입이 어림잡아 최대 천만 원인 계절노동자는 이미 한국에 입국할 때부터 이탈이 예정되어 있었다.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중개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탈방지책이라는 것은, 이런 송출 시스템을 공공영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노동자 이탈이 높아진 나라로부터 계절노동자 도입을 금지하거나, 해당 지자체에 도입 금지 페널티를 주는 일이었다.

법무부의 페널티가 현실화하자, 브로커와 지자체는 이주노동자의 이탈을 방지한다며, 이주노동자에게 귀국 보증금을 1만 달러씩 걸게 하기도 했다. 또는 가족과 친구를 연대 보증을 걸게 했다. 그리고 심지어 5명을 한 조로 묶어, 그중 한 명이 이탈하면 다른 모든 사람이 책임을 지게 하기도 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5호 담당제다. 또한 송출 브로커들은 고액의 송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이주노동 희망자들이 없자, 이들을 우선 한국에 보내고, 월급에서 일부를 자동으로 떼 가는 방식을 택하기도 했다. 올해 초, 인권위와 함께 조사했던, 주로 필리핀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의 실수령액은 한 달 80만 원 남짓이었다. 200만 원의 수령액에서 숙소사 비용으로 40만 원을 고용주가 다시 떼어가고, 여기서 다시 절반의 돈이 자동으로 브로커에게 송금되고 있었다. 결국 한 달 4일여 남짓 쉬는 계절이주노동자의 손에 한 달 월급으로 80만 원 안팎의 돈이 주어지고 있었다.

2024년 1월 어느 날 남도의 어느 마을에서 밤 9시를 넘어 가로등도 없는 좁은 차 안에서 한 계절노동자 여성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계절노동자여성은 고역스러운 상황을 견뎌내고 있었다. 그리고 인터뷰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국에 오고 싶다고 말했다. 왜냐는 질문에, “다음에는 브로커 없이 한국에 와서, 혹시 좋은 사장님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녀의 대답에 선뜻 다른 답을 하기 어려웠다. 그녀의 바람이 이루어지면, 정부와 기초지자체가 대대적으로 제도를 제대로 고치고, 좋은 사장님을 만나는 복권 당첨 같은 일이 벌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의 저녁 식탁에는 우리 농산물이라는 음식이 올라온다. 김, 깻잎, 김치 그리고 생선 어느 것 하나, 이주노동자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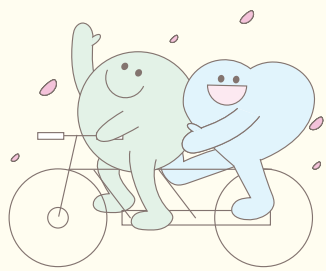
그런데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 어느 것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에서 얻은 것이라면, 누군가가 피눈물이 섞여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한국으로의 이주는 이주민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기도 하지만, 이주민은 한국의 필요로 초청된 사람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는 현재의 사회체제를 유지하려면 더욱 많은 이주민의 도움이 필요하다.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과 행복하고 평등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누군가의 눈물과 고혈로 만든 식탁 위에서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는 없지 않겠는가.



감동의 감동적인 인연 : 이기연 후원자님

이기연 후원자님을 감동이 만나고 왔습니다.

이기연 후원자님은 햇볕이 내리쬐는 더운 날이었음에도 인터뷰를 위해 한걸음 달려와 주셨어요. 웃음 가득하고 배려심 넘치는 이기연 후원자님의 인터뷰를 지금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연 후원자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의 기부회원인 이기연이라고 하고, 현재 서초동에서 변호사(연43기/ 법무법인 제이앤 소속)로 일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시나요. 변호사로서 주로 일하시는 분야가 궁금합니다.

주어지는 모든 사건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형사 합의부 부장을 맡으셨던 변호사님 및 검찰에서 차장검사를 하셨던 변호사님과 같이 일하면서 형사사건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인지 가사, 민사 사건에 비해 형사사건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중에서도 아동청소년노인인권 소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선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저는 주로 출석을 통해 정족수를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담이고, 아청노 소위에서는 아동, 청소년, 노인 인권에 관한 제반 문제를 서로 공유하며, 그중 변호사단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소위원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했었고,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소년사건 수사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관해 수사기관과의 간담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많이 맡으셨다고 들었는데,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강제추행을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회사에서 해고까지 되셨던 분을 도와 무죄 판결을 받고 다시 회사에 복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운영하시던 병원이 망하면서 사기, 횡령 등 각종 송사에 휘말리셨던 의사선생님을 도와 제반 사건을 잘 정리하고, 다시 재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감동을 알게 된 계기 및 후원을 결심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감동의 고지운 대표님이 제 대학 후배여서 감동을 알게 되었고, 제가 예전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인턴을 하면서 공익전담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보았기에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어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동에 감동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감동의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없다면 감동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이미지를 말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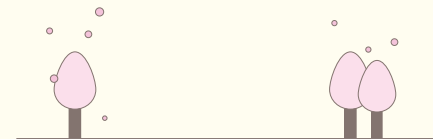
매년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편지와 기념품을 보며 따뜻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여기저기에서 감동의 활동 내용들을 접하며 '크지도 않은 조직에서 어쩌면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활동 하나하나, 발길 하나하나가 다 감동입니다.

요새 감동 구성원들은 춤, 운동 등 취미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후원자님의 취미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농구, 탁구, 야구, 수영 등과 같은 운동을 좋아했었는데, 약 9년간 어썬 변호사로 일하면서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 제 개인생활이 거의 없었어서 자연스럽게 취미생활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2년 전부터 독립해서 개업변호사로 살고 있고, 그간 아이들도 좀 커서 조금씩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있는데, 좋은 취미를 추천해 주시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땅한 취미가 없어 짬 시간에 유튜브로 쇼츠들을 종종 봤더니 내 인생 자체가 짧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감동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동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보다 더 바쁘신 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어 인터뷰 해주셔서 제가 더 영광입니다. 공익전담단체들이 할 일은 많은데, 인력과 지원은 늘 부족하고, 한정된 자원으로 한 사건, 한 사건 전심으로 마음을 쏟으며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번아웃도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익인권 분야가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나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 저는 가끔 인권 관련 종사자분들로부터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쪼록 감동 구성원님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면서 지치지 않게 오래 오래 활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이주 판례 1

I. 소개하며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껍기’ 사건은 2021년 감동 연간보고서에서도 소개해드린 사건인데요. 모로코 국적 외국인 M씨는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소송을 하던 중 체류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체류자격 연장에 필요한 6만원이 없던 M씨는 사장에게 체불임금을 요구했으나 사장의 신고로 바로 보호소에 수용됐습니다. 그는 보호소에서 이의를 제기했다가 양팔에 수갑을 채워진 채 다리가 포승줄로 묶이는, 일명 ‘새우껍기’를 당했습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구금’을 행하고 있는 외국인보호소의 민낯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M씨를 비롯해 수많은 미등록체류자들은 이 같이 반인권적인 보호소에서 기한 없이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기한 없이 보호소에 인치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복잡한 맥락을 거세한 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이주민을 무기한 감금했던 사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우리 사회 이주민 차별에 경종을 울린바, 본 결정을 소개드립니다.

II. 2023년 헌법재판소 결정례

헌법재판소 2023. 3. 23 자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결정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불합치

판시사항

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헌법불합치의견]

가. 심판대상조항은 강제퇴거대상자를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인치·수용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하여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강제퇴거대상자를 무기한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보호의 일시적·잠정적 강제조치로서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 보호기간의 상한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보호기간의 비합리적인 장기화 내지 불확실성에서 야기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지 강제퇴거명령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행정목적 때문에 기간의 제한이 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 점,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함에 있어 그 기간의 상한을 두고 있는 국제적 기준이나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확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보호 외에 주거지 제한이나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적정한 보증금의 납부, 감독관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찰 등 다양한 수단으로도 가능한 점, 현행 보호일시해제제도나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제도만으로는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문제가 보완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행정절차상 강제처분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강제처분의 집행기관으

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이 이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보호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박탈에 이르러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그 집행기관인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기관이 보호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절차적 요청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보호를 하는 경우에도 피보호자에게 위와 같은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나,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보호명령을 발령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재판관 이선애의 헌법불합치 의견]

가. 현재 2018. 2. 22. 2017헌가29 결정의 위헌의견에 참여하여 논증한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의 편의성과 확실성만을 강조하여 기간의 제한 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그 자체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사후적 구제수단 역시 실효성이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보호의 개시나 연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없고, 행정상 인신구속을 함에 있어 의견제출의 기회도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또는 무기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한 점과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점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게 되면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의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입법자는 보호기간의 상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보호의

개시나 연장 단계에서 인신구속의 타당성을 심사할 기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어떠한 형태로 보장할 것인지 등 절차 형성에 관하여 입법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25. 5.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 의견]

헌법재판소는 2018. 2. 22. 2017헌가29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강제퇴거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선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중정족수라는 형식적 요건 외에도, 선례의 판단에 법리상 잘못이 있거나 사정변경이 있다는 등 선례의 입장을 변경해야만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보호는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확보'라는 목적상 한계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시간적 한계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은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제도, 보호의 일시해제 등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최소한도의 기간 동안에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현재 2018. 2. 22. 2017헌가29 결정이 선고된 이후 비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출국명령이 확대되고, 이의신청 제도가 실질화되었으며, 보호의 연장승인 및 보호일시해제제도의 실효성도 확대되는 등 제도와 실무도 개선되어 왔다. 나아가 강제퇴거대상자의 보호기간에 대한 상한 설정과 관련하여, 미국, 일본과 중국 등은 여전히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수용기간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우리나라가 보호기간에 상한을 설정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선례 결정 당시와 같은 사정이다.

출국거부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집행의 어려움은 선례 이후 변화가 없고,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면 보호를 해제하도록 할 경우 자발적 출국의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으며, 보호해제된 강제퇴거대상자의 국내체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취업, 주거, 의료, 생계지원 등 이들의 국내체류여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바,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정책적인 변화 등

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 제3의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나 법원의 관여를 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며,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에서부터 보호의 개시, 연장, 해제에 이르는 전체적인 절차를 정함에 있어 출입국관리행정의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보호는 행정처분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엄격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강제퇴거대상자는 보호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나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엄격한 사전적 절차 및 사후적 보호수단들이 행정소송절차를 통한 구제수단의 한계를 실효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2조 제6항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헌법불합치의견이 제시하고 있는 사정들은 선례 결정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범 또는 사실상태의 변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선례를 변경할만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미선의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헌법불합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헌법 제12조 제6항은 당사자가 체포·구속된 원인관계 등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 절차와는 별도로 체포·구속 자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법원에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는 규정으로 헌법적 차원에서 독자적 지위를 가지며, 모든 형태의 공권력 행사기관이 체포 또는 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안에 대해 적용되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보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호 자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법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최소한 1회 이상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은 보호 개시 또는 계속의 적법 여부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인신보호법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인신

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보호된 외국인은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도 할 수 없다. 또한 보호의 개시나 연장 단계에서 법원의 관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통상의 행정소송절차만으로 법원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절차가 보장된다고 볼 수 없으며, 보호의 개시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보호필요성의 소멸 등으로 보호의 계속이 위법하게 된 경우, 보호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집행정지신청사건에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단정할 수도 없다.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법원의 심사를 핵심 요소로 하는 헌법 제12조 제6항의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내용이 될 수 없고, 중립적·객관적 기관이 아닌 관리감독청에 불과한 법무부장관에 의한 사후 통제나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를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헌법 제12조 제6항이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상태 그 자체에 대한 적법 여부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는 보장되어야 하고, 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보호가 출입국관리행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로 인해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는 이상 마찬가지인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2조 제6항에 위배된다.

III.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의미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신체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되며 이를 덜 침해할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점, ② 독립적·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없고 의견제출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입니다.

‘보호’는 일시적·잠정적 강제조치에 그쳐야 한다고 헌법재판소는 지적합니다. 현행법은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아 무기한 보호를 가능케 하는바, 강제퇴거명령 집행이라는 행정목적의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제적 기준이나 외국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현행법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

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어떠한 사법적 통제도 받지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보호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중립적 기간의 통제나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적법절차원칙이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야 한다는 헌법 원리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당사자 의견 수렴, 독립적·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를 거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절차적 요청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외국인보호소는 독립된 기관의 통제가 없어 구금의 필요성 등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의제기 시 독방에 가두는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행태가 적법절차원칙에 반함이 분명한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감동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크게 환영합니다. 신체의 자유는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강제퇴거명령 집행과 별개로 미등록체류자들의 신체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유럽연합(EU)은 미등록체류자 구금 기간의 상한이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며,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 많은 나라들은 구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도 강제퇴거 명령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5년에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이주민의 장기 구금 문제를 지적하며 '이주구금은 적절한 최소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구금기간을 최장 36개월로 하고, 독립된 기관이 아닌 법무부 산하 위원회에 의해 구금연장 심사를 한다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며 독립된 기관에 의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한편 아직도 아동구금과 난민신청자의 장기 구금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감동은 외국인보호제도 관련 문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이주 판례 2

I. 소개하며

'사람이 죽었다.' 단순하고도 직관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던 이 문장에 무뎠던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가자지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홍콩 시위현장에서 사람들의 목숨이 스러진다는 소식이 몇 년째 전해집니다. '오늘도 누군가 죽었네.' 학살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나'는 전쟁 기사를 보고도 무심히 스마트폰 화면을 넘깁니다. 당장 고개를 들어 주변을 보면 전쟁과 학살을 피해 온 난민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전쟁이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난민은 더 이상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난민 의제가 '우리'의 이야기가 된 이상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의적절하게도, 2023년 대법원이 난민의 출입국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란인이자 기독교 신자인 A씨는 박해로 인해 이란에서 비자(사증)를 만들 수 없어서 위조비자를 이용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요. 대법원은 A씨에 대해 형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II. 2023년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1도365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체약국에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한 난민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지 아니할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가 위 협약에 가입하고 이를 비준한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형 면제의 근거조항이 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형 면제 대상이 되는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의 의미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허가·사증 등을 받지 아니한 채 불법적으로 입국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허가·사증 등을 받아 입

국함으로써 해당 절차 관련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를 구성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형법상 범죄행위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외국인인 피고인이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 후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함으로써 위계로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및 형법 제137조에서 정한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였다. 대한민국헌법에서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 존중주의는 국가질서 형성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입법부와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구가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국제법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요청된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의 경우, 우리나라는 1992. 5. 28.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1992. 11. 11. 국회 동의를 얻어 1992. 12. 3. 유엔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1993. 3. 3.부터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발생되었다.

이처럼 난민협약은 국회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이므로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그 효력은 법률에 준하는 것으로, 개별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등에 따라 직접적인 재판규범이 될 수 있다.

난민의 불법 입국 또는 체류에 따른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난민협약 제31조 제1호는 “체약국은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제1조의 의미에 있어서 위협되고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온 난민으로서 허가 없이 그 영역에 입국하거나 또는 그 영역 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을 이유로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난민이 지체 없이 당국에 출두하고 또한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난민협약이 기본적으로 법률과 동일한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점에다가 위 조항이 체약국에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한 난민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지 아니할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조항은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이를 비준한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형 면제의 근거조항이 된다.

이때 형 면제 대상이 되는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이란 출입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입국 행위 및 이와 직접적·불가분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국가의 출입국관리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허가·사증 등을 받지 아니한 채 불법적으로 입국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허가·사증 등을 받아 입국함으로써 해당 절차 관련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를 구성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형법상 범죄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2] 이란 국적의 피고인이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 후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함으로써 위계로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입국 후 곧바로 출입국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함으로써 그 주장과 같은 사유가 인정되어 난민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등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위 협약 제31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및 형법 제137조에서 정한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1] 헌법 제6조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2호, 제94조 제2호, 제3호 / [2] 헌법 제6조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 형법 제137조,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2호, 제94조 제3호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1. 2. 17. 선고 2018노22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라고 규정하였다. 대한민국헌법에서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 존중주의는 국가질서 형성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입법부와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구가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국제법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요청된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의 경우, 우리나라는 1992. 5. 28.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1992. 11. 11. 국회 동의를 얻어 1992. 12. 3. 유엔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1993. 3. 3.부터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발생되었다.

이처럼 난민협약은 국회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이므로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그 효력은 법률에 준하는 것으로, 개별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등에 따라 직접적인 재판규범이 될 수 있다.

난민의 불법 입국 또는 체류에 따른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난민협약 제31조 제1호는 “체약국은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제1조의 의미에 있어서 위협되고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온 난민으로서 허가 없이 그 영역에 입국하거나 또는 그 영역 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을 이유로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난민이 지체 없이 당국에 출두하고 또한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난민협약이 기본적으로 법률과 동일한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점에다가 위 조항이 체약국에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한 난민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지 아니할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조항은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이를 비준한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형 면제의 근거조항이 된다.

이때 형 면제 대상이 되는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이란 출입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입국 행위 및 이와 직접적·불가분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국가의 출입국관리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허가·사증 등을 받지 아니한 채 불법적으로 입국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허가·사증 등을 받아 입국함으로써 해당 절차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구성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형법상 범죄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원심은, 이란 국적의 피고인이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 후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위계로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6. 3. 3. 입국 후 곧바로

출입국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던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유가 인정되어 난민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등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난민협약 제31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난민협약 제31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및 형법 제137조에서 정한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난민협약 제31조 제1호, 형의 면제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 법 관 민 유 숙 (재판장)

조 재 연

이 동 원

천 대 엽 (주심)

III. 판례의 의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란 속임수나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해 공무원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A씨는 위조 비자를 이용하여 입국하였는데, 속임수를 이용해 출입국 공무원의 일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위 죄목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난민이라 본국에서 정상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난민’이라는 신분이 곧 범죄가 되는 현실. 이는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근대의 정신, 나아가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대법원은 형면제 판결을 통해 위 같은 현실을 조금이나마 시정하였는데, 대법원의 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난민협약이 난민의 불법 입국을 이유로 난민에게 형벌을 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므로 이에 따라 A씨의 형을 면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조약인 난민협약을 근거로 삼아도 되는지 문제가 되는데요. 대법원은 우리나라 국회가 난민협약에 동의하였으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형면제 대상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구성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형법상 범죄행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하여 A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형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실시하였습니다.

난민이 겪는 본질적 어려움은 본국에서 적법한 서류를 발급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재 감동이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R씨도 국가 내 다수민족으로부터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난민 신청을 하였는데, R씨가 제시한 입증자료가 위조 서류가 아닌 정보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감동은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비 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2023년 감동은 예비 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을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공익 변호사의 실제 활동 및 각 단체에서의 공익법 활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공익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취지로 개최된 이번 프로그램에서 감동은 총 3명의 예비 법률가(강민서님, 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방문 및 활동가와의 만남", "시리아 변호사님의 난민 특강", "이주노동자 영화관람 및 감독과의 대화" 등의 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참여한 재학생들은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의 어려움과 이주노동자의 현실 등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공익 변호사와 감동의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동은 공익 변호사의 지평을 넓히고 이주 관련 공익법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고희준

이러한 실습을 거치며 우리나라의 법제 및 정부가 이주민들을 보는 시각에 전환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어떠한 기본권, 인권이 그 사회에 실제 존재하는지를 알려면 그 변경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언젠가 이주민들을 보더라도 인권이 존재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법조인이 필요인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수빈

감동에서 실무수습을 하며 가장 만족했던 점은 현장, 일선에 있는 사람들과 직접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비록 현장에 나가본 적은 없지만 결혼이주여성, 난민,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당사자를 만나는 기회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이주민, 난민의 현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저에게 백 마디의 글보다 큰 파급력을 가져왔습니다. 감사와 동행에서의 실무수습을 통하여 저는 공익의 꿈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 동행)에게 감사드립니다.



강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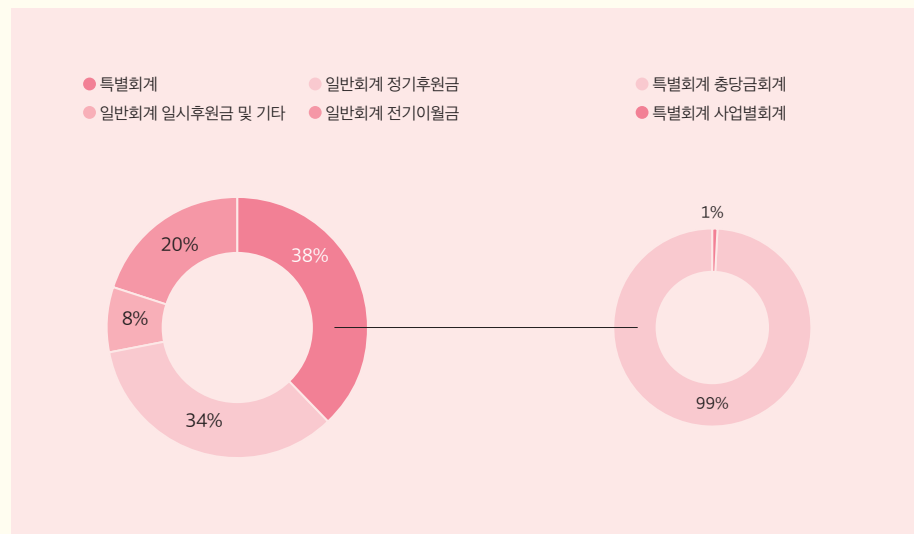
이주민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과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이를 극복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실상을 보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명제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 노력하는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감동의 2023년 재정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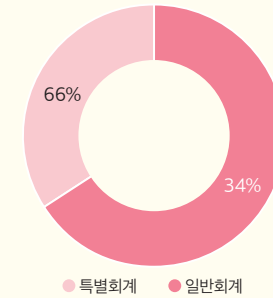
2023년 수입

2023년 일반회계 수입		2023년 특별회계		사업별 회계 수입	
전기 이월금	31,157,000	송달료(소송구조)환급		376,000	
정기후원금	51,570,000	예금 결산 이자		1,500	
일시후원금	12,494,000				
기타 (예금결산이자 등)	3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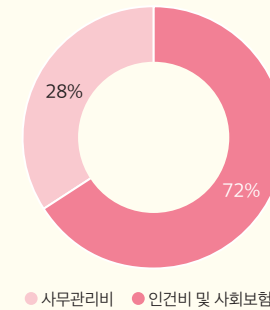
2023년 특별회계		총당금 회계 수입	
		일반	24,912,000
전기 이월금		발전기금	28,043,000
퇴직급여 총당금 전입액			4,800,000
기타 (예금결산이자 등)			52,000



2023년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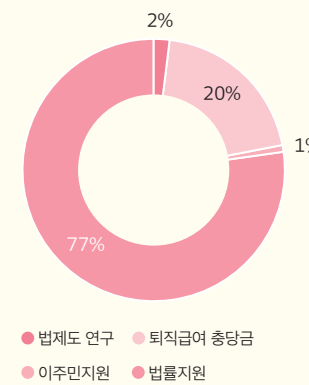


2023년 일반회계 지출



일반회계	항목	금액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33,875,000
	사무 관리비	12,918,000
	소계	46,793,000

2023년 특별회계 지출



특별회계 - 사업별회계	항목	금액
	법률지원	18,357,000
	이주민지원	462,000
	법제도 연구	100,000
	소계	18,919,000

특별회계 - 총당금회계	항목	금액
	퇴직급여 총당금 전출액	4,800,000
	소계	4,800,000

감동의 감동적인 후원자님들

후원 안내

- 감동은 지자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순수 민간 비영리 단체입니다.
- 감동은 100% 후원자님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감동은 유료 사건 수임을 일절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감동의 정기 후원 회원이 되시면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감동의 후원 회원이 되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인 감동 후원 회원은 기부금 영수증 이외에 후원금 3만원당 1시간의 공익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감동의 후원금은 이주민 무료변론 및 법제도 개선활동, 감동 센터 운영비 및 이주민지원 기금 등에 사용됩니다.
- 후원과 관련된 정보의 변경 및 증액 문의는 감동의 이메일(gamdong318@gmail.com)로 해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안내

- 2016년 12월, 감동은 (재)한빛누리와 CMS운영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 (재)한빛누리는 CMS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대신하여 집행할 뿐 감사와 동행의 고유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 CMS 이용 시 후원금은 '한빛누리공익기금' 명의로 출금되지만, 보내주신 후원금 전액은 감동이 받게 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재)한빛누리의 이름으로 발급이 됩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후원자님은 후원약정서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전부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및 일시후원 안내

감동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동의 후원금은 이주민 무료변론 및 법제도 개선활동, 감동 센터 운영비 및 이주민지원기금 등에 사용됩니다.

정기후원

홈페이지 gamdonglove.org/donate에서
정기후원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감동에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후원

우리은행 1005-602-477981(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후원자님은 감동의 이메일(gamdong318@gmail.com) 또는 문자 메시지(02 537 5459)로 《성함/주소/핸드폰번호/이메일/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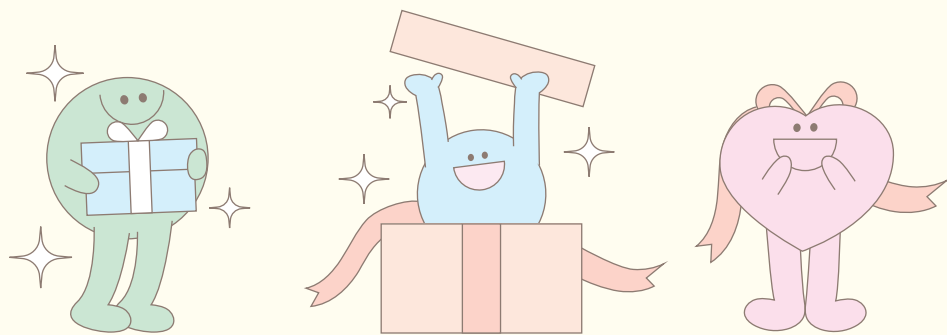
감동의 감동적인 후원자님들

*정기후원(2023년 12월 31일 기준)

강요한, 경규연, 권도연, 권영실, 김가연, 김근영, 김기천, 김문영, 김사강,
 김서현, 김성훈A, 김성훈B, 김소이, 김수현, 김신명, 김연주, 김예원, 김일진,
 김재학, 김정선, 김지향, 김택현, 김하나, 김학자, 김현영, 김현철, 김현화,
 김형우, 남지민, 도재형, 류민희, 박대영, 박상구, 박은희, 박종연, 박종운,
 박종훈, 박지현, 박현, 배현아, 서인석, 서지화, 석알마문, 신영재,
 신현호, 안주영, 양정숙, 여연심, 양혜우, 염형국, 유의정, 윤성철, 윤영훈,
 윤재훈, 윤혜영, 이경아, 이기연, 이동엽, 이상민A, 이상민B, 이승훈, 이용열,
 이용우, 이일, 이정민, 이종권, 이종훈, 이찬희, 이학주, 이해진, 임세와, 임자운,
 임지영, 장영석, 장원경, 전수연, 정교화, 정대정, 정동재, 정인, 정인호, 정재기,
 정지윤, 정현진, 조아라, 조현욱, 최경석, 최광해, 최정규, 한운장, 허거훈, 황필규,
 patricia Goedde, (주)까치, 법무법인(유한) 지평, 서울지방변호사회, 재단법인 사랑샘

*일시후원(2023년 12월 31일 기준)

법조공익모임 나우, 정은재, 정인진, 최은경, 한애라



감동의 소식이 더 궁금하시다면?

